

경기도 성능위주설계 심의 공통의견

□ 소방분야

○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화재 안전성 확보

- 가스소화설비 방호구역 도어펜 테스트 [☞] 소방전문가 자격자 실시
- 준비작동식 S/P 설치 시 상태 확인 ⇨ 2차측 에어 콤프레샤 설치(제습 기능)
※ 습식스프링클러 설치 적극 검토
- 소방시설 준공 전 전수검사 전문업체 실시(별도의 공정으로 특기시방서 공통사항에 기재) 후 완공검사 접수 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
- ~~지하층은 동 Core별 프리액션밸브 2차측 송수구와 연결 설치('18.5.23. 삭제)~~
- 내진설계 시 PD 및 층고의 적정성을 검토, 건축계획 반영
- 피트층 및 피트공간 내 소방시설 설치 검토(방재실에서 감시 기능 적용)
-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아날로그감지기 설치 적용
- 모든 알람밸브의 2차 측에는 과압 방지 조치
- 소방자재는 기술원에서 인증(인정)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기
- 근생, 판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마련(피난층 제외)
※ 유창층 기준과 관계없이 연기제어대책 마련 검토 등

○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및 피난 안정성 강화

- 엘리베이터 승강장 연기 확산 방지 대책 마련
- 고가수조 방식에 따른 자연낙차 우선 고려
※ 수리계산 수원산정, 각 동별 옥상수조 설치 적용 및 예비펌프 설치
- 제연설비의 과압방지 및 풍량조절 등 적정 성능확보 방안 마련
☞ 제연 T.A.B 소방기술사 책임 하에 착공 시부터 실시, 댐퍼 누기율 반영
- 무선통신보조설비 15층 이하 3개층 마다 적용
-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(종합방재실 제어기능 포함)
-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(옥내소화전) 적용
- 동파방지용 배관보온재는 무기화합물 소재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
- 피난층 및 지하주차장 피난계단 입구에 픽토그램, 피난유도선 설치 검토
- 소방펌프 성능곡선 확인 후 체절운전 시 양정이 200m 미만으로 조치
- 공기안전매트 전개 위치를 고려한 콘센트 및 이동장비 설치 시방서 명기

□ 건축분야

- 소방차량 부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※ 관할 소방서 고가차량 등 확인
 - 소방차량 통행로는 부지 내 단차, 회전 반경, 회차 가능성 등 고려 계획
 - 대피공간 외 최소 2개면 이상 소방차량 접근 가능성 확보
 - 문주 및 소방차 출동로 상 필로티의 높이는 4.5M이상 확보
 - 소방차 통행로의 바닥 슬라브 강도는 소방차량 하중을 고려한 적정설계 및 부서위치 5° 이하 경사로 확보
 - 부지 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은 소방차 소방활동 상 장애요인 제거
 - 건물 외벽에서 소방차량 부서위치(진입창 또는 대피공간)까지의 거리 (최소 6m ~ 15m 유지) 및 전개각도 등 표기 ※ 조경공간 검토
 - 소방관 진입창은 공기호흡기 등 장비 착용의 특수성을 고려, 크기 확보
 - ☞ 최소 가로 750mm, 세로 1,200mm 이상
 - 비상용 승강기는 환자이송용 들것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치 검토
 - ☞ 최소 길이 2,200mm 이상, 폭 1,100mm 이상
- 피난·방재계획(피난안전성 확보)
 -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수직 피난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
 - 건물 창 등 개구부에서의 수직 연소확대 방지대책 마련
 - ☞ 외벽 불연재료 설치 검토(단열재 포함) 및 내부마감재의 난연성능 제시
 - ☞ 스펀드럴 1.2m이상 확보 및 개구부 인근 S/P헤드 설치 등
 - 특별피난계단 적정 설계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양방향 피난안전성 확보
 - 지하주차장 내 연기 확산 방지 및 연기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
 - ☞ 지하주차장 내 급기 피난계단 인근 설치, 배기 외벽 인근 설치
 - ☞ 환풍기 시간당 6회 이상, 비상전원, 배기구 내열성, 자동 및 수동기동 방식 등
 - 출입문 개방 시 60cm 이상 통로 확보(용도별 복도 폭 2분의 1이상)
 - 승강장 내화구조 구획 및 거실과 통하는 출입구 갑종방화문 설치
 -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실, 발전기실, 펌프실 등 침수방지대책 마련
 - ☞ 물탱크실과 단차를 두어 설치, 배수펌프 용량 확보 등 검토
 - 지하주차장 피난계단은 보행거리 50m 이내 검토
 - 쓰레기집하장 및 재활용창고의 화재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
 - ※ 지상층 설치, 방화구획, 연기배출설비, 자연배기 가능 장소, CCTV 감시 등 검토
 - 지하 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 등 DA 지상 마감 확인(환기계획 포함)

- 지하층에 노출되는 배수배관은 금속류 배관으로 적용 검토
- 종합방재실 내 휴게공간, 화장실, 세면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
- 주거용 오피스텔 내 재실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
 - ※ 양방향 피난을 위한 공동주택의 설비 기준 준용 또는 유효한 연기배출 등 검토
- 소화전함 내화벽체 매립 시 소화전함 뒤편 내화벽체의 내화성능 확보
- 전기실, 발전기실, 소방펌프실 위치는 피난계단과 근접 설치
-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제출(환기팬, 승강기, 방화설비 등 모든 소방부하 산정)

○ 기타사항(국민신문고 제안채택)

- 옥내소화전 안내문 양면(내·외) 부착
- 소화기 위치표지 기둥 또는 반자 부근 부착(판매시설)

본 심의기준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성능위주설계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대상의 명확성,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**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**